

창원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가단102249 판결 [전세권부 채권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A (개명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종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 고 C

변론 종결 2019. 6. 18.

판결 선고 2019. 7. 2.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1889 전세권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채권 3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D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다. 김해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H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1.11. 접수 제298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영숙

별지

## 청구원인

### 1. 기초사실

#### 가. 전세권설정계약

원고는 D과 그의 소유의 김해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H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11. 전세금 35,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 차임 700,000원, 매월 11일 선불 지급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는 한편 D은 원고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담보목적으로 2016. 1. 11. 전세금 35,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전부, 존속기간 2016. 1. 11.부터 2018. 1. 11.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 나. 피고의 전세권압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44970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갑 제5호증의1)에 기하여 별지 기재의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1889호로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결정한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갑 제4호증)에 기하여 2017. 4. 6.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별지 전세권에 관하여 6번 전세권부 채권압류등기(2017. 4. 6. 접수 제31275호)가 되었습니다.

####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기각판결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 14497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을 수령하지 못하여 2017. 4. 11. 추완항소를 제기한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7

나2981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18. 9. 7.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144970호)이 취소되면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갑 제5호증의3)되었고 동 판결이 2018. 9. 28. 확정(갑 제5호증의4)되었습니다.

## 2. 이 사건 전세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 피고의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44970호)이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7나2981호)에서 취소가 되고 위 사건이 2018. 9. 28.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집행절차가 종료되었고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위와 같이 항소심(제2심)에서 취소되어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받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심하지 아니한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인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 판결, 대법원 2010. 12. 13. 선고 2009다37725 판결]

## 3.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산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전세권설정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자인 전부 채권자인 피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위와 같이 항소심(제2심)에서 취소되어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의 압류등기명의자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될 경우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끝.

## 별 지

### 1. 청구채권

청구채권의 합계 : 금261,087,603원

(원금 : 금50,000,000원, 이자계 금210,758,903원, 집행비용 : 금328,700원)

#### 청구채권의 내역

청구금액 : 금50,000,000원

위 이자 : 금210,758,903원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7. 6. 29.까지(732일) 연 72% (금72,197,260원)의,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2,570일) 연 30%(금105,616,438원)의, 2014. 7. 15.부터 2017. 3. 3.까지(962일) 연 25% (금32,945,205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 금328,700원

(신청서 첩부인지대 4,000원, 제증명인지대(확정증명등) 2,500원, 신청서작성 서  
기료 300,000원, 송달료 22,200원)

집행권원: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44970호 대여금사건에 관하여 2007. 3. 19. 선고한 집행  
력 있는 판결정본

### 2. 압류, 전부할 채권

청구채권의 합계 : 위 청구채권의 합계 261,087,603원 중 일부금 35,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부동산의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중 위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가. 부동산의 표시****1동 건물의 표시**

김해시 E, I에 있는

F아파트 G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J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4974㎡

**나. 전세권의 표시**

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년 1월 11일 접수 제2988호 전세권설정

1. 전세금 : 35,000,000원

1. 전세권의 범위 : 주거용 건물 전부

1. 존속기간 : 2016년 1월 11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1. 전세권반환기 : 2018년 1월 11일 끝.